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가단110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세현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238,411원 및 그 중 9,9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 3, 4, 5, 6, 8, 9, 10, 11, 12항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7,613,9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7,613,99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에 관한 채권

(가) 주식회사 D은 2015. 1. 19. 피고 B에게 4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9. 1. 19.,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6. 18.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주식회사 D은 피고 B에게 2015. 7. 13.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468585호로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4. ‘피고 B은 원고에게 6,246,840원 및 그 중 3,936,214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20. 2. 10. 기준으로 피고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10,375,584원(=원금잔액 3,936,214원 + 인수전 이자잔액 44,899원 + 인수후 이자잔액 6,394,471원)이다.

2) E 주식회사에 관한 채권

(가) E 주식회사는 2014. 3. 12.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9. 3. 12.,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6.5%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5. 8. 3. F 주식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E 주식회사는 2015. 8. 5.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이후 F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사무를 위임받아 2018. 11. 28.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20. 2. 10. 기준으로 피고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7,238,411원(=원금잔액 9,990,000원 + 인수전 이자잔액 12,383,281원 + 인수후 이자잔액 4,865,130원)이다.

나. 피고 C의 상속재산 취득

1) 피고 B의 어머니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5. 31.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 자식들인 H, 피고 C, I, 피고 B이 있었고, 장녀였던 J은 그 이전인 1993. 12. 11. 사망하였으므로 J의 자식들인 K, L, M이 있었으며(대습상속), 피고 B의 상속지분은 1/5이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11. 2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피고 B의 상속분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8항 기재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항 부동산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1996. 3. 16. 채권최고액 백미 30가마(채권가격 금 구만육천원), 근저당권자 N, O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6. 7. 14.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4)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2, 3, 4, 5, 6, 8, 9, 10, 11, 1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6. 채권최고액 7,800만 원, 근저당권자 P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E 주식회사 관련 양수금 채권 원리금 합계액 27,238,411원 및 그 중 원금잔액 9,99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E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일자는 2014. 4. 2.이고 피고 B은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이자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E 주식회사는 2014. 3. 12.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채권은 2015. 8. 3. F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사실, ② F 주식회사는 2017. 4. 26.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01522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20. F 주식회사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F 주식회사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8경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14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8.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E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위 판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의 대출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Q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2015. 11. 24.) R에 18,095,000원과 614,000원, S에 13,326,000원, T은행에 125,928,000원, U은행에 79,431,000원과 37,347,000원, V카드에 1,453,000원, W은행에 31,008,000원과 5,576,000원 등 합계 326,614,214원(원금 기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5)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인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158,018,800원을 빌렸다가 30,436,582원만을 변제하여

나머지 127,582,21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C이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1/5)을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6. 채권최고액 백미 30가마(채권가격 금 구만육천원), 근저당권자 N, O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6. 7. 14.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2, 3, 4, 5, 6, 8, 9, 10, 11, 1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6. 채권최고액 7,800만 원, 근저당권자 P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익자인 피고 C이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어 원물반환의 대상이나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감정인 X의 시가감정축택결과에 의하면, 사건 제7항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사건 제1, 2, 3, 4, 5, 6, 8, 9, 10, 11, 12항 부동산)의 2021. 5. 20. 기준 시가는 237,129,800원이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8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채권최고액 백미 30가마(채권가격 구만육천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1, 2, 3, 4, 5, 6, 8, 9, 10, 11, 12항 부동산의 가액 237,129,800원에서 구만 육천 원을 공제한 237,033,800원 중 피고 B의 상속분 상당액 47,406,760원($=237,033,800원 \times 1/5$)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한편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2. 10. 기준 원고의 양수금 채권액(피보전채권액)은 37,613,995원($=10,375,584원 + 27,238,411원$)이다.

위 피보전채권액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피고 B의 상속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보전채권액인 37,613,9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7,613,9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별지